##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국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128 발의연월일: 2020. 9. 22.

발 의 자 : 김남국·진성준·고민정

오영환 · 김승원 · 전용기

장경태 · 김용민 · 신정훈

최강욱 • 민형배 의원

(119)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임위원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제재하는 수단은 존재하지 아니함.

최근 일부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상임위원 지위를 활용하여 개인이나 자신의 직계존속·직계비속, 법인이나 기관, 단체에 유리한 정책·예산 배정을 추진하거나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또한 국회의원이 상임위에서 취득한 정보를 바탕으로 부동산이나 유가증권 등 재산상 거래를 하기도 하는바, 국회의원 신뢰도 제고를 위해 이해충돌 방지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상임위원이 해당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 또는 사적 이익 추구행위 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징계할 수 있도록 하며, 상임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이해충돌 상황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2 등).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2의 제목 중 "금지"를 "등 금지"로 하고, 같은 조 중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한 영리행위를"을 "다음 각 호의 행위를"로 하며,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한 영리 행위
- 2. 상임위원의 직위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개인이나 기관·단체에 부정한 특혜를 주는 행위
- 3. 상임위원으로 재직 중 취득한 정보를 부당하게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사용하게 하는 행위
- 4.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한 부동산·유가증권 등의 재산상 거래를 하는 행위
- 5.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하는 행위로서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업무 행위

제40조의3 및 제44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40조의3(상임위원의 결격사유) 상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 1. 상임위원 자신이 해당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공직자윤리

- 법」 제2조의2에 따른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위반하거나 위반할 현저한 가능성이 있는 경우
- 2. 상임위원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이 해당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법인·기관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법인등"이라 한다)의 임직원 또는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경우
- 3. 상임위원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이 해당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법인등을 대리하거나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그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법인등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 4. 상임위원 또는 상임위원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이 해당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법인등의 주식·지분을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
- 5. 그 밖에 상임위원의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경 우
- 제44조의2(특별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특별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에 관하여는 제40조의3을 준용한다.
- 제155조에 제3의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의2. 제40조의2를 위반하였을 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임위원 및 특별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법 시행 당시 상임위원 및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 또는 개선된 사람은 제40조의3 및 제44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0조의2(상임위원의 직무 관련	제40조의2(상임위원의 직무 관련
영리행위 <u>금지</u> ) 상임위원은 <u>소</u>	영리행위 <u>등 금지</u> )
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	- <u>다음 각 호의 행위를</u>
한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u>&lt;신 설&gt;</u>	1.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한 영리 행위
<u>&lt;신 설&gt;</u>	2. 상임위원의 직위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개인
	이나 기관·단체에 부정한 특
	<u>혜를 주는 행위</u>
<u>&lt;신 설&gt;</u>	3. 상임위원으로 재직 중 취득
	한 정보를 부당하게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사용하게 하는 행위
<u>&lt;신 설&gt;</u>	4.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한 부동산·유가증권 등의
	재산상 거래를 하는 행위
<u>&lt;신 설&gt;</u>	5.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하는 행위로서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업무 행위
<u>&lt;신 설&gt;</u>	제40조의3(상임위원의 결격사유)

상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 당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 1. 상임위원 자신이 해당 상임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공 직자윤리법」 제2조의2에 따른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위반하거나 위반할 현저한 가능성이 있는 경우
- 2. 상임위원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이 해당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법인·기관 또는 단체 (이하 이 조에서 "법인등"이라 한다)의 임직원 또는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경우
- 3. 상임위원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이 해당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법인등을 대리하거나고문·자문 등을 제공하거나그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법인 등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 4. 상임위원 또는 상임위원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이 해당 상 임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법인

<신 설>

제155조(징계) 국회는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그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다만, 의원이 제10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아니하고 그 의결로써 징계할수 있다.

1. ~ 3. (생 략) <신 설>

4. ~ 16. (생략)

<u>등의 수식·지문을 국회규칙으</u>
로 정하는 비율 이상 소유하
고 있는 경우
5. 그 밖에 상임위원의 사적 이
해관계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회규칙
으로 정하는 경우
제44조의2(특별위원회 위원의 결
격사유) 특별위원회 위원의 결
격사유에 관하여는 제40조의3
을 준용한다.
제155조(징계)
1. ~ 3. (현행과 같음)
<u>3의2. 제40조의2를 위반하였을</u>
때 12 (한 제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4. ~ 16. (현행과 같음)